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02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이원택·문대림·임미애

이병진 • 주철현 • 임호선

조인철 • 윤준병 • 송옥주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 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 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 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	<u> <</u> 삭 ㅋ	네 <u>></u>			
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u>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u>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					
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					
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					
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					
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					
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					
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					
<u>야 한다.</u>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참여 자격
- 2. 참여기간 · 참여방법 및 참여 절차
-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 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 조성 및 관리
-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 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 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 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

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 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 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 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예산액
-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 액